

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기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7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4월 01일

발 의 자 : 박기열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경영, 김기덕, 김생환,
김재형, 김제리, 김종무,
김태수, 김평남, 김희걸,
노승재, 박기재, 박상구,
박순규, 성흠제, 송명화,
송아량, 송정빈, 신정호,
양민규, 오중석, 유정희,
이광성, 이상훈, 이성배,
이영실, 임종국, 장상기,
전석기, 최 선, 최웅식,
최정순, 한기영, 황규복
의원(33명)

1. 제안이유

- 2019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턴키 설계 등을 평가하는 민간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패방지를 위해 2020년 12월 8일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의 지방·특별심의 및 자문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도록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(이하 "위촉위원"이라 한다)의 임기 중 연임 조건을 종전 두 차례 한정에서 한 차례로 함. (안 제2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항 중 “두 차례”를 “한 차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